## 께쌘♥└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5회

(12/22)

1	곳유묵의	과리해위는	공유자의	과바수로써	하여야 하다	( )

2.	甲과 乙이 각 1/2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, 甲은	특별한 사정
	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	인도를 청구
	할 수 없다. ( )	

- 3. 지상권은 지상물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4.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자와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금 지된다. ( )
- 5.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으며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 (
- 6.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, 요역지의 매수인은 지역권의 이전등기를 한 때에 지 역권을 취득한다. ( )
- 7.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 ( )
- 8.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 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 ( )
- 9.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 다. ( )
- 10.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 (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X)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
- 2. (O)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 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, 지분권에 기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야 한다(대판 전합 2020, 5, 21 2018다287522).
- 3. (X) 지상권은 지상물과는 별개이므로 지상권만의 분리양도도 가능하다.
- 4. (X) 지상권의 양도성을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지상권절정자와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면, 그 특약 은 무효가 된다.
- 5. (O)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(제292조 제2 항).
- 6. (X) 요역지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지역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.
- 7. (X)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을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,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8. (X)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하며 목적물의 점유와 견련성은 요건이 아니 다. 따라서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,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.
- 9. (X)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,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.
- 10. (O) 제322조 제1항